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04호(號) 1931(昭和 6)년 5월 14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84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,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, 私設鐵道, 軌道並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5월 1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5월 1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2조(條) 본(本) 규칙(規則)에는 아래[左]의 약어(略語)를 사용(使用)함.

1. 여객규칙(旅客規則)이란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을 말함.
2.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란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철도(鐵道), 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와 여객하물(旅客荷物)의 범위(範圍)를 말함.
3. 철도(鐵道)란 철도(鐵道: 자동차선[自動車線]을 포함[包含]함) 및 궤도(軌道)를 말함.
4. 자동차선(自動車線)이란 조선철도주식회사 자동차선(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線)을 말함.
5. 국(局)이란 조선총독부 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)을 말함.
6. 승차권(乘車券)이란 승차권(乘車券) 및 승차선권(乘車船券)을 말함.

제9조(條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자동차선(自動車線)에서는 도중하차(途中下車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제13조(條)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47조(條)에서 제52조(條)까지 및 제62조(條)에서 제71조(條)까지의 규정(規定)에 의(依)한 특종할인(特種割引)에 대하여는 철도(鐵道) 및 항로(航路)에서 국(局)과 동일(同)의 취급(取扱)을 함. 단(但) 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간(間) 이외(以外)의 항로(航路) 및 자동차선(自動車線)에 있어서 할인율(割引率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

1. 자동차선(自動車線)에 있어서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47조(條) 및 제50조(條)의 할인율(割引率)은 2할(割)로 하고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62조(條), 제65조(條) 및 제68조(條)에 규정(規定)한 여객(旅客)에 대하여는 할인(割引)을 하지 아니함.
2. 인천(仁川)·즈푸(芝罘) 간(間) 및 인천(仁川)·다롄(大連) 간(間)에 있어서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47조(條) 및 제50조(條)의 할인율(割引率)은 각(各) 등(等) 3할(割)로 하고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62조(條), 제65조(條) 및 제68조(條)에 규정(規定)한 여객(旅客)에 대(對)하여는 할인(割引)을 하지 아니함.
3. 부산(釜山)·히타카즈(比田勝) 간(間), 부산(釜山)·이즈하라(嚴原) 간(間), 부산(釜山) 이

키(壹岐) 간(間), 부산(釜山)·하카타(博多) 간(間)에 있어서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47조(條) 및 제50조(條)의 할인율(割引率)은 2,3등(等) 2할(割)로 하고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62조(條), 제65조(條) 및 제68조(條)에 규정(規定)한 여객(旅客)에 대(對)하여는 할인(割引)을 하지 아니함.

제14조(條)제1항(項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자동차선(自動車線)에서는 할인(割引)을 하지 아니함.

제15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자동차선(自動車線)에서는 경찰관리(警察官吏)에 대(對)하여만 2할(割)을 저감(低減)하고 기타(其他)의 사람에 대(對)하여는 할인(割引)을 하지 아니함.

제21조(條)의2 자동차선(自動車線) 발착(發著) 여객(旅客)의 탁송(託送)해야 할 수하물(手荷物)의 중량(重量)은 여객(旅客) 1인(人)당(當) 성인(大人) 30kg(斤), 소아(小兒) 15kg(斤)을 한도(限度)로 함.